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93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이주환·엄태영·최승재

배준영 • 윤창현 • 김용판

양금희 • 지성호 • 한무경

이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양성,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의 보다 내실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 서는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 하고, 구도심 등 혁 신도시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6호, 제29조의5).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조성"을 "조성 및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근지역과의"를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지원 대책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을 "이 전공공기관"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 스"를 "재화나 서비스(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를 "범위, 우선 구매의 비율·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비율이 이전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②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	2
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u>조성</u> 에	<u>조성</u>
관한 사항	및 교통기반시설 확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구도심 등 <u>인근지역과의</u> 상	6 <u>인근지역의 활성</u>
생발전에 관한 사항	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 ①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u>이전공공기관</u>
<u>이전공공기관</u> 이 이전하는 지역	
에서 생산되는 <u>재화나 서비스</u>	<u>재화나 서비스</u>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
<u>서비스</u> 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포
	<u> 함한다. 이하 같다)</u>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이 경우 이전공공기관</u>
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
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비율
이 이전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
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범위, 우선 구매
의 비육·기준